

김영자 회원 완전 무죄 판결

지난 3월 9일 부산 지방법원에서 윤 석명 판사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던 김 영자 간호원 주사사건은 전 회원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7월 24일 고등법원 판사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, 무죄를 언도함으로써 완전히 무죄가 되었음을 전회원에게 알립니다.

1969년 5월 23일 사건이 발생되고 7월 17일 구속기소된지 만 1년만에 완전히 관가름이 났습니다.

의사의 처방에 의한 주사등 행위에 있어 행위자체에 간호원의 과실이 없는 한 합법이라는 우리의 주장대로 법적보장을 받게된 것입니다.

그 동안에 김영자 회원이 입은 심신 및 경제적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고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.

현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가 한번은 이런 억울한 과정을 밟게 될 운명에 있었던 현실에서 불행하게 김영자 회원이 이 연국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회원과 더불어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

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

- ㉠. 전 국민이 간호원에 대한 개념과 존재를 새롭게 하였고
- ㉡. 주사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알리는 동시에 완전 법적보장을 받게되었으며
- ㉢. 단결의 결과가 간호원들을 약한 존재라고 인식하여 왔던 일반사회의 통념을 뒤집어 놓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하나의 힘은 약하나 다수가 굳게 뭉칠때 어떤 어려운 장벽도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

조직체(단결의 힘)를 통한 활동을 우리 회원들과 사회에 알리든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보겠습니다.

앞으로 많이 부딪칠 여러가지 난문제들을 합치고 뭉치어 발전, 향상시켜야겠다는 각 회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기대되며 이번 사건을 기해

음으로 앞으로 적극 후원 또는 협조해 주신 언론계, 병원협회, 각 병원과 본회 고문이신 이태영 변호사, 서울대학의 강 석영 교수, 그의 여러분께, 특히 주무부인 보사부와 전 회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.